

2024. 5. 28.(화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5월 28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

건축기획과장	임우진	2133-7090
--------	-----	-----------

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: 3매

건축설비팀장	김승환	2133-7274
--------	-----	-----------

서울시, 기계설비 성능점검 실무교육 완료... '성능점검 기준일 조정' 건의

- 3~5월 세 차례 걸쳐 2024년도 교육...기계설비 성능점검 담당자 456명 참석
- 작년 교육 대비 교육시간 확대, 현장 실무교육 강화로 교육 만족도 대폭 향상
- 참가한 기술인력 대다수 2년 내 신규자로서 현장점검 경험이 대부분 부족
- 교육 참가자 요구에 따라 국토부에 '성능점검 기준일자 조정' 등 제도 개선 요청
- 시 "이번 교육 통해 기술인력 직무능력 향상 등 기계설비 관리역량 강화 기대"

서울시는 건축물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'24년 기계설비 성능점검 실무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.

-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「기계설비법」에 근거하여 건축물 내 냉난방·공조설비 등의 안전과 성능을 점검하는 작업으로,
- 이번 교육은 기계설비 성능점검 실무자 대상 법정 의무교육제도가 미비하여 서울시(주택정책실)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'23년에 이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술인력 대상 직무 전문교육이다.

이번 교육은 ▲3.6(수) ▲3.13(수) ▲5.9(목) 총 3회에 걸쳐 서울시청 서소문청사(후생동 4층강당)에서 1일 8시간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, 기계설비 성능점검 담당자 약 460명이 교육에 참석하였다.

- 지난해 서울시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기계설비 성능점검 실무교육을 시행했으며,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술인력 388명이 교육에 참여했다.
- 올해는 시·구·산하기관과 서울시 성능점검등록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여 작년 교육인원 대비 68명이 많은 총 456명(공무원 128명, 업체직원 328명)이 교육에 참여하였다.



- 또한, 시는 교육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'23년 교육 개선요구 의견을 반영, 전체 교육시간 및 실무교육 시간을 대폭 강화하였으며, 이에 따라 교육자들의 87%는 교육 만족도에 대해 매우 만족·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, 이는 전년 대비 14%p 이상 높은 수준이다.

- 교육시간 : ('23년) 2시간30분 ⇒ ('24년) 8시간
- 실무교육시간 : ('23년) 1시간25분 ⇒ ('24년) 5시간

- 이번 교육에 참여한 기술인력 대부분은 그간 성능점검과 관련 없는 분야에 종사했던 기계설비 경력 2년 이내의 신규자로, 평소 필요하다고 느꼈던 성능점검 현장점검 실무교육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준 점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.

- 성능점검 근무경력 : 1년 미만 44%, 1년~2년 29%, 2년초과 27%

- 교육 세부 내용과 관련, 강사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(약 88%)가 가장 높았으며, 교육시간 및 교재 만족도(약 74%)가 상대적으로 낮았다. 교육 개선 의견으로 공무원/업체 직원 교육을 분리 시행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 내년도 교육 운영계획 수립 시 보완하기로 했다.
- 또한,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술 인력 법정 의무교육 법제화(법사위 계류 중) 동향을 파악하여 법정 교육 신설 전까지 서울시 차원의 교육 지원 정책 지속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.
- 또한, 성능점검 기준일이 건축물 면적별로 달라 지자체 및 관리주체의 관리가 어려우므로 성능점검 기준일자는 연중 실시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법령·제도 개선 사항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.
-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“건축물의 사용수명을 연장하고, 쾌적하고 안전한 건축물 운영을 위해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꼭 필요한 작업”이라며, “기계설비 산업의 발전과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, 건물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점검 교육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행정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니 기술 인력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

[기계설비 성능점검 개요]

- 근거법규 : 기계설비법 17조(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), 법 21조(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),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(국토부 고시 제 2021-1013호)
-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(성능 점검)하여야 하고, 성능점검은 '기계설비 성능점검업' 등록업체가 수행할 수 있음.